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관련 번호 2029

제안년월일: 2024년 9월 2일

제 안 자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 서울시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,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,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고, 일부 조 제목 등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.

2. 주요 골자

- 조 제목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(안 제6조, 제7조).
-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(안 제7조제5항).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 제목 "(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"을 "(공공기관 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)"으로 한다.

안 제7조의 제목 "(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)"을 "(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다만"을 "다만,"으로, "서비스공급"을 "서비스 공급"으로, "한한다"를 "한정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<u>현</u>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1회용품 사용 제한 등)	제6조(공공기관 등에서의 1	제6조(공공기관의 1회용품
① ~ ⑥ (생 략)	회용품 사용 제한 등)	<u>사용 제한 등</u>)
	① ~ ⑥ (현행과 같음)	① ~ ⑥ (개정안과 같음)
제 7조(<u>지원사업</u>) ① 시장은	제7조(민간 확산 등을 위한	제7조(1회용품 사용 줄이기
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	지원사업) ①	<u>사업 추진 및 지원</u>) ①
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		
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		
진할 수 있다.		,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	4. (개정안과 같음)
	필요한 연구·조사 사업	
4. ~ 5. (생 략)	5. ~ 6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	5.·6. (개정안과 같음)
	같음)	
② 시장은 민간기관·단체, 법제	②	②
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	<u>다만</u>	
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	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	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
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	원은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	원은 민간의 <u>서비스 공급</u> 이 취
원을 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설></u>	약한 지역으로 한한다.	약한 지역으로 <u>한정한다</u> .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	③ ~ ④ (개정안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	<u><삭 제></u>
	을 전문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	
	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	
	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또는 기	
	관에 위탁할 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	제9조(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
	소·기업의 지정 등)	소·기업의 지정 등)
	① (생 략)	① (개정안과 같음)
	②	②
	1. (생 략)	1. (개정안과 같음)
	2.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	<u><삭 제></u>
	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	
	3. ~ 5. (생 략)	3. ~ 5. (개정안과 같음)